

의안번호	제676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331회)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6월 1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6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경제부지사 자격기준 개정 (안 제2조)
  -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 
⇒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재직한 자
  -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 
⇒ 그 밖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4년이상 재직한 자”를 “재직한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자격기준)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.</p> <p>1.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</p> <p>2.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</p> <p>3.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<u>4년이상 재직한 자</u></p> <p>4. <u>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</u></p>	<p>제2조(자격기준)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u>재직한 자</u></p> <p>4. <u>그 밖에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</u></p>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0조(부지사·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) ①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, 시에 부시장, 군에 부군수,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,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: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.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: 2명 (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: 1명으로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,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·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·부지사는 시·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.

④ 시의 부시장, 군의 부군수,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⑤ 시·도의 부시장과 부지사, 시의 부시장·부군수·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·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부시장·부지사를 3명 두는 시·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